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879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24.
- (3) 회 부 일 : 2024.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거부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현행	개정안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생략)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 ----- ----- <u>거부하여서는</u>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40조의2(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

현행	개정안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u>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u> 3의2. ~ 7. (생략) ④ (생략)	<u>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u>거부한---</u> 3의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¹⁾
-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실내 음식점의 경우에는 점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때 업주 등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건 동반출입 거부 시에도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³⁾ 최근 5년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의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의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의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효석. (2018.10.14.). “눈을 빼놓고 다니라는 썸” 시각장애인 안내견 쫓아내는 식당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398519?sid=103>

박관찬. (2021.4.19.). 안내견 동반 거부, 이젠 달라져야 한다. 함께걸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78&page=3

김지선. (2022.3.22.). “알리지 우려”...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식당 논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LIVS5Q>

홍화경. (2023.4.4.). “휠체어·안내견 출입 거부”...‘영업방해’ 신고까지.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42650>

3)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건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건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건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동안 보조건 출입거부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6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보조건 동반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보조건 출입거부 과태료 신고·부과 내역 >

구분	신고 건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만원)	비고
2019년	4	2	200	서울, 경남(김해)
2020년	3	2	200	경기(부천, 의정부)
2021년	1	-	-	-
2022년	1	-	-	-
2023년	3	2	300	부산(동구) 충남(서산)

주1): 신고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자방자치단체의 확인 및 계도 조치, 피신고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부과취소 결정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상황(예: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장애인이 보조건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및 장소(예: 병원의 무균실, 식당의 조리실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조건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건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⁴⁾.

- 또한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서는 보조견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① 통제 불가능한 보조 견에 대해 견주가 통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을 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⁵⁾

□ 한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파악됨.

□ 다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⁶⁾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관한 내용을 동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때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5)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6)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정수용)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

- 다만, 상황* 및 장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해야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현행 법 제40조의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 수용

*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경우 등

** 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특정구역

□ 장애인이동권 보장,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국가·지자체에 홍보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 수용

문 의 처

02)6788-5502